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가단51646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6. 2.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6.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049,9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별지] 원고의 채권 내역 기재와 같다.

나. D의 모인 E은 2012. 3.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9. 6.경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E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D, F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7.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협의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는 2019. 8. 23.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피고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0. 9. 4.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2.경 거래가액은 6억 8700만 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1. 11. D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5595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6. 18. “피고는 원고에게 28,271,411원 및 그 중 16,599,383원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D에 대하여 16,599,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을 갖고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위 양수금 판결 등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D의 악의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D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등 참조), D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D에 대한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D의 부로서 D의 무자력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피고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즈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6억 8700만 원으로 추인하면, 원고가 구하는 채권액은 D의 지분[196,285,714원(687,000,000원×2/7)]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49,9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

별지